

# 감사위원회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이 규정에서 '집행임원'이라 함은 상법 제408조의2 내지 제408조의9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

### 제4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기타 회사의 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참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6조(의무)

-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 및 위원회는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책임)

-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장 구성 및 운영

### 제8조(구성)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충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사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 제9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한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11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13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5)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감사계획 및 결과

-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11)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14)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제15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위원회는 의사록의 사본을 7일 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경우 의사록을 일정기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개여부 및 비공개 기간은 각 해당 안건 별로 위원회가 정한다.

### 제16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 ①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과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내부회계관리제도)

- ①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년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2.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책임은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다는 사실
4.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했다는 사실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평가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6. 중요성의 관점에서 모범규준에 근거한 종합평가결론
7.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8.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의견 설명
9. 보고서 일자
10.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11. 기타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 다. 권고사항

#### 제18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1.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2. 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3. 회계정책 또는 추정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 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 제19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가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배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제10조 제2항은 이 회사의 발행주식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상장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위 조항 시행 전까지는 매년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한다.